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2026. 6.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 례

1. 전형일정	1
2. 모집인원	2
3. 지원자격	2
4. 전형방법	4
5. 합격자 선발방법	9
6. 제출서류	12
7. 전 형 료	15
8. 원서접수 방법	15
9. 지원자 유의사항	16
10. 이의제기	18
【별표 1】 자기소개서	19
【별표 2】 자기확인서	24
【별표 3】 지원자 서약서	25
【별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	26
【별표 5】 APOSTILLE 확인서	27
【건 본】 입학원서 및 수험표	28

1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입학원서 접수		<u>2026. 9. 28.(월) 09:00</u> ~ <u>10. 2.(금) 18:00</u>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원서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받습니다. (우편·방문 접수 불가) -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보관하여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입력		<u>2026. 9. 28.(월)</u> <u>09:00 ~ 10. 6.(화)</u> <u>18:00</u>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원서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더라도 구비 서류 제출 기간 안에는 수정 가능합니다. (입력 기간 후 수정 제출 불가)
구비서류 제출		<u>2026. 9. 29.(화) 09:00</u> ~ <u>10. 06.(화) 18:00</u> ※ 토·일·공휴일 제외	(우) 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입학처 입학과 (상남국제관 2층)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등기우편:<u>10.6.(화)</u> 소인까지 유효 -방문제출:<u>10.6.(화)</u> 18시까지 유효 - 제출 서류 및 지원자 유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합격자 발표		<u>2026. 11. 10.(화)</u> <u>17:00 예정</u>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사항 위반자 불합격 통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페이지 참조
면접고사	㉠군	<u>2026. 11. 14.(토)</u> <u>09:00 ~</u>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 (부산캠퍼스)	- 수험표 및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군	<u>2026. 11. 28.(토)</u> <u>09:00 ~</u>		
최종합격자발표 및 합격증 출력		<u>2026. 12. 11.(금)</u> <u>17:00 예정</u>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등록금고지서 출력		<u>2027. 1. 4.(월)</u> <u>10:00 ~</u>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http://e-onestop.pusan.ac.kr)	
등록금 납부		<u>2027. 1. 4.(월)</u> ~ <u>1. 5.(화)</u>	본교 지정 은행 (등록금 고지서 참조)	- 은행 업무시간 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 출력		<u>2027. 1. 8.(금)</u> <u>17:00 예정</u>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2차 이후의 추가합격자는 해당자가 있을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1차 추가 합격자 등록금고지서 출력		<u>2027. 1. 11.(월)</u> <u>10:00 ~</u>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http://e-onestop.pusan.ac.kr)	
1차 추가 합격자 등록금 납부		<u>2027. 1. 11.(월)</u> ~ <u>1. 12.(화)</u>	본교 지정 은행 (등록금 고지서 참조)	
이중등록자 포기마감		<u>2027. 1. 29.(금)</u> <u>18:00 까지</u>	부산대학교 입학처 입학과	

※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2

모집인원

과정	모집 군	전형유형	모집인원	정원외
법무석사	㉠군	일반전형	55명	결원인원
		특별전형	5명	
	㉡군	일반전형	56명	결원인원
		특별전형	4명	
합 계			120명	

※ 출신학과의 계열 및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군과 ㉡군을 동시 지원 가능. 단, 같은 군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원의외 인원(결원보충)의 선발

정원의외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6학년도 까지 시행, 2027학년도부터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해당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정원의외 선발이 가능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임. 이 때 정원의외 선발 인원은 2026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입학생 쿼터제를 적용하여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3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 2026년에 실시되는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사람

※ (가나군 공통) LEET 논술답안이 서류평가의 필수요소이므로 지원자는 LEET 논술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본인이 지원하는 입학학기 이전 (2027년 2월까지, 단 일본 등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에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가 인정되는 사람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23개월 20일 이내(2024. 10. 17.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점수)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사람. 단,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함

구분	TOEFL(iBT)	TEPS	TOEIC	IELTS
만점	120점(6점)	600점	990점	9등급
일반응시자	80점(4점)	285점	700점	6등급
청각장애인*	35점(2.5점)	153점	350점	3등급

※ TOEIC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되며, IELTS는 Academic, General Training 모듈 모두 인정됨.

※ TOEFL iBT 점수 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점수와 변경 점수(괄호 점수) 모두 인정하며, 변경점수(괄호점수)는 1~6점(최도) 체계 적용

※ TOEFL iBT의 My Best Score는 인정되지 않으나, Home Edition은 인정함

※ 202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공인 영어능력시험 기준 점수 조정 운영

- (일반응시자) TOEFL(iBT) 85점(4점), NEW TEPS 285점, TOEIC 750점, IELTS 6등급

- (청각장애인) TOEFL(iBT) 21점(1.5점), NEW TEPS 153점, TOEIC 350점, IELTS 4등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관련 "4.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특별전형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형	지원자격
신체적 배려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원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원 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당 수급자 ⑦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자녀)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그 자녀 또는 손자녀 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서 4급 이상의 부상등급 결정을 받은 사람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자녀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사람(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사람 ⑥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⑧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함

다. 군복무자 관련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입학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가. 원칙

-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함
-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형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단,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비법학사, 타 대학 졸업자, 지역균형인재, 경제적 여건만 고려한 취약계층 등의 선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합격자 최종 선발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함

나. 입학생 쿼터제

구분	선발 인원	기준
비법학사 쿼터	전체 모집인원의 1/3(40명) 이상	▪ 법학사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 법학사 학위가 있더라도 다른 학사학위가 있으면 비법학사로 간주함 ▪ 법학을 주전공, 다른 전공을 부전공하여 법학사 학위만 있는 경우는 법학사로 간주함 ▪ 다른 주전공을 하면서 법학을 부전공하여 다른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는 비법학사로 인정함
타 대학 졸업자 쿼터	전체 모집인원의 1/3(40명) 이상	▪ 부산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 학부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 출신학교는 학부를 기준으로 하며, 학사편입의 경우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판단함 ▪ 독학사 등 학위인정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함
지역 균형인재 쿼터	전체 모집인원의 15%(18명) 이상	▪ 부산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대학 학부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 위 지역 및 타 지역의 복수 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됨. 단, 부산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대학을 '본인지정학위'로 선택한 사람에 한함 ▪ 본교가 위 지역에 있으나 캠퍼스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 타 지역 캠퍼스 졸업자(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함(사이버대학 포함)
특별전형 경제적 여건 쿼터	특별전형 전체 모집인원의 30%(3명) 이상	▪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경제적 배려대상'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사람

- ※ 입학생 쿼터제는 최종 선발인원 중 각 쿼터별 인원수가 포함된다는 취지임(우선선발 아님)
- ※ 지원자의 각 쿼터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원자가 입학원서에 기재
- ※ 여러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관련 쿼터에 중복되어 포함
- ※ 비법학사, 타 대학 졸업자, 지역균형인재 쿼터의 적용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기준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심의·결정

다.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구 분		전형 단계	선발 인원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합계
				LEET (논술제외)	대학성적	영어능력	서류평가	면접평가	
㉓군 모집	일반 전형	1단계	165명	30점 (30%)	30점 (30%)	P/F	20점 (20%)	－	80점
		2단계	55명	1단계 전형 총점 (80%)					20점 (20%)
	특별 전형	1단계	20명	30점 (30%)	30점 (30%)	P/F	20점 (20%)	－	80점
		2단계	5명	1단계 전형 총점 (80%)					20점 (20%)
㉔군 모집	일반 전형	1단계	168명	30점 (30%)	30점 (30%)	P/F	20점 (20%)	－	80점
		2단계	56명	1단계 전형 총점 (80%)					20점 (20%)
	특별 전형	1단계	16명	30점 (30%)	30점 (30%)	P/F	20점 (20%)	－	80점
		2단계	4명	1단계 전형 총점 (80%)					20점 (20%)

※ 각 모집 군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의 3배수(특별전형은 4배수)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및 입학생 쿼터제를 고려하여 1단계 선발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단계 전형요소의 실질반영 비율 (㉓·㉔군 공통)

구 분	LEET (논술제외)	대학성적	영어능력	서류평가	합 계
배 점	30점	30점	P/F	20점	80점
실질 반영점수	30점	25점	P/F	20점	75점
1단계 전형 내 실질 반영비율	40%	33.3%	P/F	26.7%	100%

라.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 LEET(논술 제외) 성적

-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영역에서 획득한 표준점수 및 백분위점수를 다음과 같이 환산

$$[(\text{언어이해 표준점수}/90 \times 40 + \text{추리논증 표준점수}/120 \times 60) \times 0.8] + \{(\text{언어이해 백분위점수} \times 0.4 + \text{추리논증 백분위점수} \times 0.6) \times 0.2\} \times 30\%$$

- 표준점수 80%, 백분위점수 20% 비율로 반영함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모두 고려하여 표준점수에 큰 비중을 두되 분포 변경에 따른 상대성을 보완하기 위해 백분위점수도 일부 반영)
- 언어이해 40%, 추리논증 60% 비율로 반영함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을 공히 반영하되 추리논증 영역을 보다 높은 비중으로 활용)
- 표준점수의 백분율 점수 환산은 각 표준점수 범위의 최고값으로 언어이해 90, 추리논증 120을 기준으로 함 (언어이해 표준점수 범위는 0~90, 추리논증 표준점수 범위는 0~120 임)
- 표준점수 80% 환산값과 백분위점수 20% 환산값을 합하여 LEET 반영비율 30% 값을 산출함

□ 대학성적

- 학부과정 전 학년의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지원자가 제출한 성적표에 표시된 100점 만점 기준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 반영점수 =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 × 25%) + 기본점수 5점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을 평가대상으로 함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등 본과와 예과가 있는 경우 본과 성적을 평가대상으로 함
- 백분위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의 평점평균의 실점환산 기준표에 따름 (단, 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아래 방식 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성적 산출 방법(예시) >

성적 산출 공식: $\sum(\text{교과목당 학점} \times \text{취득 점수}) / \sum(\text{교과목당 학점}) = \text{실점평균}$

(예시) 교과목당 학점이 1점이고 6개 과목에서 아래와 같이 점수를 취득하였을 때 실점평균은 $388 / 6 = 64.67(\text{점})$

과목명	학점(A)	취득 점수(B)	학점×취득 점수(A×B)
AAA	1	67	67
BBB	1	66	66
CCC	1	62	62
DDD	1	60	60
EEE	1	72	72
FFF	1	61	61
합계	6		388

- 편입학, 복수학위 취득자, 독학사 등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① 일반편입학

- 편입학한 대학(교)의 성적과 편입학 전의 대학(교) 성적을 평가대상으로 함

② 학사편입학에 의하여 복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 편입학 전의 대학(교)을 지정한 경우, 편입학 전의 대학(교)의 성적을 평가대상으로 함
- 편입학한 대학(교)을 지정한 경우, 편입학한 대학(교)의 성적과 편입학 전의 대학(교)의 성적을 평가대상으로 함

③ 학사편입학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 해당 지원자가 지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의 성적을 평가대상으로 함

④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등 편입학에 의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전적 대학(교)의 성적이 있을 경우 전적 대학의 성적을 합산하여 반영함

⑤ 이상의 기준에 의할 때 복수의 성적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예시에 준하여 백분위 점수를 구함

□ 복수의 성적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시

A 대학에서 4년 재학, 학점 130점, 백분위 점수 85.0점이고,
B 대학에서 2년 재학, 학점 70점, 백분위 점수 91.0점인 경우
→ $[(130 \times 85) + (70 \times 91)] \div (130 + 70) = 87.10$

□ 영어능력

-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은 다음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미만이면 실격(Fail)으로 판정
- 복수의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자가 지정한 1개의 성적만을 평가함

구분	TOEFL(iBT)	TEPS	TOEIC	IELTS
만점	120점(6점)	600점	990점	9등급
일반응시자	80점(4점)	285점	700점	6등급
청각장애인*	35점(2.5점)	153점	350점	3등급

※ TOEIC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되며, IELTS는 Academic, General Training 모듈 모두 인정됨.

※ TOEFL iBT 점수 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점수와 변경 점수(괄호 점수) 모두 인정하며, 변경점수(괄호점수)는 1~6점(최도) 체계 적용

※ TOEFL iBT의 My Best Score는 인정되지 않으나, Home Edition은 인정함

※ 202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공인 영어능력시험 기준 점수 조정 운영

- (일반응시자) TOEFL(iBT) 85점(4점), NEW TEPS 285점, TOEIC 750점, IELTS 6등급
- (청각장애인) TOEFL(iBT) 21점(1.5점), NEW TEPS 153점, TOEIC 350점, IELTS 4등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관련 “4.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류평가

- 자기소개서, LEET 논술답안, 대학수강과목·영어능력·제2외국어능력·연구 및 사회 봉사 활동·각종 수상·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기초로 평가함
- 서류평가 시 개인 식별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됨
- 본교의 채점 기준에 따라 자기소개서는 다음의 각 평가 항목을 종합 평가함

서류평가 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비율(%)
학업수행능력	학력사항 및 학부생활	30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	협력·갈등 해결의 경험, 자기계발 노력, 주요 관심분야 및 학업계획	20
전문분야 법조인으로 성장가능성	전문자격 및 직업경력, 미래비전 및 진로 계획	15
글로벌 법조인으로 성장가능성	외국어능력,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	15
사회활동경력 및 봉사활동	국내·외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의 다양성과 적극성	20

※ 전문분야는 변호사자격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널리 의미하며, 반드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분야(금융해운통상법)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

□ LEET 논술시험

- LEET 논술시험은 서류평가의 필수요건에 해당되므로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LEET 논술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군 공통사항)

< 지원자 본인 및 부모·친인척 등의 신상정보의 기재 금지 >

-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또는 지원자 자신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재학중인 타 법학전문대학원 포함)을 기재하여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불이익 조치

구 분		기재예시	불이익 내용
관련자	내용		
부모 및 친인척	실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의 기재	① 부모·친인척 등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불합격*
	직장(직위, 직업)명의 기재	①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광의적 직종명의 기재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어머니’	감점조치**
지원자 본인	지원자 신상정보 기재	① 지원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출신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 포함***)	

*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불합격 통보 일정 (개별통보로 진행)

※ 발표 : **2026. 11. 3.(화)** / 이의신청 기간 : **2026. 11. 3.(화) ~ 11. 4.(수)**

** 서류평가 전형에서 10점 이내로 감점 처리함. 단,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순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함. 그 밖에 부모·친인척 등이 법조 및 기타 유력 직업임을 암시한 경우 서류평가 전형에서 10점 이내로 감점 처리함. 자기소개서 모방 또는 표절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처리함.

*** 수상 경력(장학금 수혜), 봉사활동 및 기타 활동 등을 명시할 때는 ○○복지장학금 수혜, ○○대학교 ○○대회 대상 수상(대회종목 등은 명시 가능) 등 특정 단어로 출신대학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비공개 처리하여야 함. 해당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처리함.

□ 면접시험

- 의사소통능력 및 사고력의 종합적 평가를 위해 면접문제를 제시하고 지원자의 구술 답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채점기준에 따라 다음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함

평가항목	배점비율(%)
질의에 대한 이해력	15
문제 분석능력 및 내용구성	25
주장의 명료성	20
주장 및 근거의 논리성	20
답변의 시간적 배분과 표현력	20

-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사유를 불문함) 다른 전형 결과에 상관없이 불합격 조치함
- 면접 시 지원자의 성명 · 수험번호 및 다른 전형요소와 관련된 정보 · 자료를 면접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음 (가번호 부여)
- 면접위원회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외의 외부인사(본교 타 학과 교수 포함)를 포함함
- 교내 상황에 따라 면접시험의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 안내 예정

5

합격자 선발방법

가. 원칙

- 각 모집군 전형유형별로 분리 선발함
- 각 전형의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
- 총 모집인원 중에서 입학생 쿼터제를 적용함

나. 1단계 합격자 선발

- 1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에 의한 성적을 모두 합산한 후 성적순으로 선발함
-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선발함
- 위 기준에 따라 각 모집 모집군별로 1단계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결과, 해당 입학생 쿼터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당 쿼터 비율에 따른 군별 모집인원의 2배수 (특별전형 경제적 여건 쿼터의 경우 3배수)보다 부족한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2배수(특별전형 경제적 여건 쿼터의 경우 3배수) 까지 후순위자를 1단계 합격자로 추가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선발

- ㉠, ㉡군은 1단계 전형 총점과 면접시험 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함
- ㉠군과 ㉡군에 중복 합격한 사람은 총점이 높은 모집군에서 합격한 것으로 처리함. 단, 총점이 같을 경우 ㉡군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함
- 모집군을 달리하여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각각 지원한 사람(예: ㉠군 일반전형, ㉡군 특별전형 지원)가 모두 합격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전형(해당 모집군)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함
- 합격선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함
 - ① 1단계 전형 총점 고득점자
 - ② LEET 언어이해 · 추리논증 영역 고득점자
 - ③ 서류평가 고득점자
 - ④ 면접시험 고득점자

라. 추가합격자 선발

- 미등록자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전형유형별로 예비합격자 중 성적이 높은 순서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되 군별로 쿼터를 적용함
- 예비합격자 순위는 공개함. 단, 추가합격자 선발 시 입학생 쿼터제 충족여부에 따라 차순위 예비합격자의 선발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군별 특별전형의 최종 합격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함에도 더 이상 충원할 예비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은 ㉡군, ㉡군은 ㉠군의 특별전형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함

마. 입학생 쿼터제 적용

- 입학생 쿼터제는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선발 시 군별로 적용함
- 1단계전형 합격자 선발 시 쿼터제 적용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비법학사/타교출신/지역균형인재 쿼터는 각 군별(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합하여) 쿼터를 적용함
- 특별전형 경제적 여건 쿼터의 적용을 위하여 《경제적 배려대상》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에서 최소 2명, ㉡군에서 최소 1명을 각각 최종합격자로 선발함
- 2단계(최종) 합격자 선발시 : 특별전형은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일반전型的 2단계(최종) 합격자 선발 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을 합하여 입학생 쿼터제 적용

바. 정원외 합격자 선발

- 정원외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6학년도까지 시행함. 다만, 해당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정원외 선발이 가능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임
- 해당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정원외 선발을 하는 경우 해당 인원은 2026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중에서 입학생 쿼터제를 적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함
- 결원인원을 ㉠군, ㉡군의 순으로 1명씩 순차 배분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특별전형 추가 선발이 필요할 경우 ㉡군에서 선발함

사. 기타사항

- 전형 또는 쿼터의 모집인원이 미달하거나 최종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가 모집 전형 또는 쿼터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 여부를 결정함

가. 공통 제출서류

[제출여부] ○ 제출, X 미제출 / [필수여부] ○ 필수 제출, △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제출여부		필수 여부	세부내용
	원본	사본		
입학원서	○	X	○	▪ 인터넷(온라인) 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	○	○	▪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되, 최종 합격한 졸업예정자는 2027. 2. 26.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보완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학적부	○	○	○	▪ 대학(학사과정)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학적부 ※ 대학원 학적부: 대학원 재학사실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징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성적 백분위 표기 필수)	○	○	○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 학점 취득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 ▪ 편입학한 사람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 성적증명서만 제출 ▪ 대학성적 평가를 위한 모든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됨. ※ 성적증명서에는 전 학년의 총 이수학점·평점평균·평점만점 및 전 학년 평점평균 (GPA)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체 백분율과 평균평점이 없는 대학(특히 외국대학) 출신자가 학점 변환 서비스 제공 기관(WES, ECE, IERF)을 통해 백분율 또는 4.5점 만점 체계로 환산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	○	○	▪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 성적표 (TOEFL / TEPS / TOEIC/IELTS)	○	○	○	▪ 2024. 10. 17. 이후 응시한 시험 중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성적만 인정하며, 본인이 제출한 성적이 본교에서 각 시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성적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토플 iBT 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표에 ETS사이트(https://toefl-registration.ets.org/TOEFLWeb)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재함.(우측 하단 기재) ▪ 청각장애인 기준 적용을 원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제출
자기확인서, 특별전형 관련서류	○	X	△	▪ 특별전형 지원자만 제출
자기소개서	X	X	○	▪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 및 수정 ▪ 입력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 불요(온라인으로 제출)
증빙 서류 목록표	○	○	○	▪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항목을 최대 10개 이내로 정리하여 증빙서류 목록표에 기재함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 서류 목록표에 기재한 증빙서류	○	○	△	▪ 사회활동·봉사 및 경력증명서, 각종 수상 및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기타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 증빙자료 등 목록표에 기재된 항목에 한하여 최대 10개 이내, 분량은 A4 단면 기준 30매 이내로 제한됨(모아찍기 금지) ▪ 표창장, 자격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는 원본 확인 후 반환함 ▪ 제2외국어 능력 증빙자료(공인 외국어성적)를 제출하는 경우, 2024. 10. 17. 이후의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 DELF / DALF, TESTDAF, DELE 등 재응시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 공인성적은 대학 입학 이후의 것이라면 응시일에 관계없이 제출 가능함 ▪ 추천서는 접수하지 않음
석·박사 학위증명서	○	○	△	▪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
지원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	X	○	소정양식 [별표 3, 4] 참조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과 함께 제출. 확인 후 원본 반환 예정) 증빙자료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만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예 : 표창장, 자격증 등)는 접수처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후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는 각 서류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 * 원본 : 지원자 확인용 / **사본 : 1단계 서류심사용 → 위 표 참조
- * 원본은 그대로 제출하고, 사본에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성명, 사진, 출신학교명, 학번, 생년월일,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보호자 성명 등)를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블라인드 처리 시에는 검정색 유성펜(매직 등)으로 해당 정보를 완전히 가린 후, 그 위에 수정테이프 등을 덧씌워 뒷면에서도 내용이 비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명이나 로고, 워터마크 등이 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서류는 복사본에서 식별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서류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또는 불합격 조치하므로 주의)
- * 원본 서류 반환 요구 시에는 등기 우표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서류(성적증명서 등) 및 법학 사설시험 관련 성적표 등 서류 일체는 제출이 금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자기소개서 증빙자료로 필요 시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증명서는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 학교명 블라인드 처리 필수)
- * 서류제출 시 “봉투표지”는 인터넷 원서 접수 완료 후 “접수완료확인-출력물-[출력] 봉투표지”에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편철순서(원본/사본)

연번	원본	사본
1	입학원서	대학졸업증명서(사본)
2	대학졸업증명서	학적부(사본)
3	학적부	대학성적증명서(사본)
4	대학성적증명서	법학적성시험성적표(사본)
5	법학적성시험성적표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표(사본)
6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표	증빙서류 목록표(사본)
7	자기확인서(특별전형만 해당)	증빙서류목록표 순으로 증빙서류(30매 이내)(사본)
8	특별전형 관련 서류(특별전형만 해당)	석사 및 박사 학위증명서 등 관련 서류(증빙서류 개수 제외)(사본)
9	증빙서류 목록표	
10	증빙서류목록표 순으로 증빙서류(30매 이내)	
11	석사 및 박사 학위증명서 등 관련 서류(증빙서류 개수 제외)	
12	지원자 서약서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 ※ 모든 서류는 표의 제출서류 편철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원본과 사본을 각각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표에 기재된 연번은 편철 순서를 안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별도로 서류에 연번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1) 특별전형 유형별 제출서류 현황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 자기확인서([별표 2] 소정양식, 이하 같음)
경제적 배려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원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 복지급여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택 1)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원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원	
	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당 수급자	
	⑦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자녀)	-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유공자 본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자기확인서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그 자녀 또는 손자녀	- 독립유공자확인원 1부(유공자 본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1부 및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임이 확인 가능한 범위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자기확인서
	③ 「의상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로서 4급 이상의 부상등급 결정을 받은 사람	- 의상자증명서(본인기준, 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 자기확인서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사람(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으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사람	-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본인 기준) -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⑥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 - 자기확인서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해당하는 본인 또는 부모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⑧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 국보훈부 발급 대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본인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기확인서

2) 특별전형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장애인증명서, 복지급여수급자 지원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①~⑦관련)는 지원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당 발급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음.
2.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받음.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제적 배려대상 중 각종 복지급여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4.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상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국적·귀화에 관한 증명서·확인서, 국가보훈부 발급 대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는 서류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5.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확인 시 해당 시설이 폐업했을 경우, 해당 시설의 인허가 여부 및 재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행정기관(담당 공무원)의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된 공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전형료

가. 전형료 : 250,000원

※ 특별전형 지원자 중 경제적 배려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료를 면제함

나. 1단계 전형 불합격자 전형료 반환금 : 100,000원

8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전에 우리 대학교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숙지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착오 없이 접수합니다.

- ① 홈페이지 접속(<http://go.pusan.ac.kr> 또는 <http://www.jinhakapply.com>)
- ② 사용자 로그인 (비회원인 경우는 회원 가입)
- ③ 순서대로 원서 작성 [본인의 증명사진(3cm x 4cm) File upload]
- ④ 원서 기재사항 확인
- ⑤ 자기소개서 입력
- ⑥ 전형료 결제
- ⑦ 원서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 ⑧ 구비서류 제출 (등기우편, 방문 등 기일 내 제출)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방문제출 가능함
-등기우편: **10.6.(화)**소인까지 유효 -방문제출: **10.6.(화)**18시 도착까지 유효

< 원서접수 및 자기소개서 입력 장애 발생 시 문의처 >

(주)진학어플라이 : ☎ 1544-7715 / FAX 02)735-8432 / E-mail : apply@jinhakapply.com

가.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 입학원서의 착오 기재 및 구비서류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자의 전화번호 및 추가연락처는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학전형 기간 중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 즉시 우리 대학교 입학과에 알려야 합니다. (입학과 Tel : 051-510-1215)
- 입학원서의 추가연락처에 보호자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원서접수 거부 또는 실격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군(㉠군 또는 ㉡군)에 속하는 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복수지원,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및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그리고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학원서 및 수험표 부착용 사진파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므로 전산 입력용 증명사진(3cm×4cm) 파일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학원서 및 수험표용 사진은 수험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기한 기준 2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동일 증명사진 파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 입력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 응시를 불허합니다.
- 접수된 입학원서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1단계 불합격자 및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면접고사에 응시가 불가함을 사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해 면접고사에 단순 결시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수험생의 질병·전형일자 사후 변경의 사유로 미응시, 명백한 지원자격 미충족 등이 환불 해당

나. 일반적인 사항

- 원서 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 수험표 및 제출서류 등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출력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입학과(051-510-12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증명서는 원본과 함께 공증된 번역 자료도 제출합니다.
- 외국대학 등 대학성적(GPA)의 백분율(100점 만점)과 평균평점이 없는 경우 학점 변환서비스 제공기관(WES, ECE, IERF)을 통해 환산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대학성적 평가를 위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서류는 발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전자관인이 날인된 경우 원본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직인 부존재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 발급기관에서 담당자 연락처 및 성명 기재 후 확인(도장)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관인이 날인되고 원본 표시가 별도로 없는 경우 해당 문서가 원본임을 본인이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원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본 서류 반환 요구 시에는 등기 우표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 등기 우표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보내지 않을 시, 서류 반환이 제한됨
- 외국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한 경우 2027. 2. 26.(금)까지 학위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별표4]’를 제출하거나, 학교 소재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단, 중국 대학 졸업(예정)자는 ‘영사확인서’ 또는 China Academic Degrees & Graduate Education Information 웹사이트 (<http://www.cdgdc.edu.cn/>) CHSI 중국 고등교육 학생정보(www.chsi.com.cn)에서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는 면접고사 일자에 정시 출석하여야 하며 수험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수험생은 면접고사 당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 녹음기(보이스 펜 포함), 카메라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라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본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한 후 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중등록한 사람은 2027. 1. 29.(금)까지 타 법학전문대학원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중등록한 사람은 전형 종료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이미 등록한 사람이 타 법학전문대학원에 추가 합격하여 본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 전에 반드시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사 및 전형관련 제반규정과 지침에 의합니다.
- 세부 전형일정 및 기타 공지사항 등은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go.pusan.ac.kr>)에 게시합니다.
- LEET 성적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년간 LEET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학전형과 관련된 평가자료는 10년간 보관합니다.

다. 복수지원 금지

- 같은 모집군에 속하는 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복수지원은 불가하며, 복수지원 금지 사항 위반자는 전형 종료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10

이의제기

-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교의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 규정, 사정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 관련문의 >

■ 입학처 입학과

- * 전화 : 051) 510-1215
- * 주소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입학처 입학과(상남국제관 2층)
- *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go.pusan.ac.kr>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 전화 : 051) 510-1727
- * 주소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 홈페이지 : <http://law.pusan.ac.kr>

[별표1] 자기소개서(지원자 공통)

자 기 소 개 서 [1]

□ 지원자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X	

* 상기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또는 원서접수대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소개서 입력창에 [1]~[4]의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 ②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의 중요한 평가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정직하고 소신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부모·친인척 등의 신상 정보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본인 출신대학명(**재학중인 타 법학전문대학원 포함**))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비공개 처리), 위반 시 불합격 또는 감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모방 또는 표절의 경우 서류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처리됩니다.
- ③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대학 학부 진학 이후의 것에 한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④ 증빙서류목록표에는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 중 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원본 서류가 없거나 증빙 불가능한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야 함)
- ⑤ 자기소개서 입력을 완료한 후, 지원자 서약서와 증빙서류목록표는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자기소개서[1]~[4]은 제출 필요 없음.)
- ⑥ 증빙서류는 최대 10개까지만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총 분량은 A4 단면 기준 30매 이내로 제한됩니다. 모아찍기 및 스테이플러 사용은 금지하며, 증빙서류는 목록표 순서대로 정리하고, 모든 서류 하단 중앙에 수기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 뒤, 클립 또는 집게로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자기소개서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자 기 소 개 서 [2] - 개인 소개

1. 본인의 가치관과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700자 이내)

2. 근무경력, 동아리, 봉사활동, 각종 연수 등의 활동 및 자신의 역할, 기타 사회경력에 대해 기술하시오.
(800자 이내)

※ 글자 수에는 띄어쓰기 포함 안 됨

자 기 소 개 서 [3] - 개인 소개

3. 대학(학사학위 이상의 과정 포함) 진학 후 학업성취 및 장학금 수혜 내역, 관심분야, 자격증 및 제2외국어 능력 등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1500자 이내)

※ 글자 수에는 띄어쓰기 포함 안 됨

자 기 소 개 서 [4] - 지원동기 및 장래계획

1. 법학전문대학원 지원동기, 주요 관심분야 및 학습계획에 대해 기술하십시오.(1000자 이내)

2. 법조인으로서의 향후 진로 또는 활동계획에 대해 기술하십시오.(500자 이내)

※ 글자 수에는 띄어쓰기 포함 안 됨

증빙 서류 목록표

수험번호			성명	(인)	
연번	서류명		일자 (발급일 또는 완료일)	발급기관명	페이지
1					1~2p
2					3p
3					4~10p
4					
5					
6					
7					
8					
9					
10					(최대) ~ 30p

■ 증빙서류목록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1. 이 목록표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심사위원 제공용 사본과 서류확인용 원본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목록표 사본에는 수험번호 및 성명을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며, 출신학교 등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부득이한 경우 'OO대학', 'OO기관' 등으로 기재)
2. 블라인드 처리는 검정색 유성펜(매직)으로 정보를 가린 후, 그 위에 흰색 수정테이프 등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감점 또는 서류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3. 본 목록표에는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 가능한 서류(예: 직장 등 사회경력, 봉사활동, 자격증, 공인시험, 장학금 수혜 등)에 한하여 최대 10개 이내로 작성합니다. 단,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대학 학부 진학 이후의 활동에 한합니다.
4. 증빙서류는 목록표 순서대로 제출하며, 전체 증빙서류를 합한 총 분량은 A4 단면 기준 30매 이내여야 합니다(모아찍기 금지). 각 증빙서류당 30매가 아닌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빙서류 하단 중앙에 수기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클립 또는 집게로 묶어(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제출합니다.
5. 증빙서류의 개수는 평가 대상이 아니며,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목록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표2] 자기확인서(특별전형 지원자 공통)

자 기 학 인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 대학교		() 대학교 년 월 졸업(예정)		
연락처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지원 모집군 / 전형		군 전형		
확 인 내 용				
※ 특별전형 중 지원자가 해당하는 유형과 지원 자격, 그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모집요강 [3. 지원자격 - 나. 특별전형]을 참조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 선발유형 : 경제적배려대상 ☐ 지원기준 : ① 수급가구원				
0 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학 무효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_____ (서명)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지 원 자 서 약 서

1. 본인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서약서와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모두 해당 발급기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3.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나 대리 작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및 향후 귀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4. 본인은 자기소개서를 입학 후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별표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합격 시 협의회 중복지원 및 중복합격자 조회, 학력조회, 장학, 학사, 통계업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등으로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 필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학교정보
(특별전형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자는 소득 및 재산정보)
 - 선택 항목 : 추가연락처, 계좌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전형(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으로 활용(다만, 합격 시 학력조회, 장학, 학사, 통계업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등으로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최종등록자의 학적정보(학사업무)는 준영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선택항목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연락처나 환불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 |
|---------|------------------------------|----------------------------------|
| - 필수 항목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 항목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여권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전형(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으로 활용(다만, 합격 시 학력조회, 장학, 학사업무로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최종등록자의 학적정보(학사업무)는 준영구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안내>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전형(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으로 활용(다만, 합격 시 학력조회, 장학, 학사, 통계업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등으로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최종등록자의 학적정보(학사업무)는 준영구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합격 시 학력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사람)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 기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 생년월일, LEET 수험번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출신학교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조회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ETS Korea, 텡스관리위원회, 한국토익위원회	성명, 생년월일, 응시일자, 수험번호, 공인영어성적	공인영어성적 진위확인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해당 항목은 원서 접수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별표5] APOSTILLE 확인서

APOSTILLE 확인서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①)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Certified	
5. at (④) 7. by (⑥) 8. No. (⑦) 9. Seal/stamp	6. (⑤) 10. Signature
(⑧)	(⑨)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 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건본] 입학원서 및 수험표

수험 번호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		전형 구분	㉠군 / ㉡군	
						특별전형 / 일반전형	
지 원 자	성 명	(한글)		(영문)		사진 (3cm × 4cm) (최근 2개월 이내 사진 첨부)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이 메 일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추가 연락처 1				※ 추가 합격자 발표 등에 필요한 연락처 기재 요망 (전화번호만 기재할 것)			
추가 연락처 2							
학 력	학	년	월	대학(교)	대학	학과졸업(예정)	
		년	월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취득(예정)
		년	월	대학(교)	대학원	학과	박사학위취득(예정)
대학, 대학원		유 []				무 []	
재학 중 징계 여부		징계내역 및 사유					
LEET 점수 (표준점수)		언어이해 ()점 추리논증 ()점		공인영어 성적 (1개만 기재) TOEFL iBT () TEPS () TOEIC () IELTS ()			
학부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		① ()점					
		② 일반편입학 []	편입학 전 ()학점 ()점				
		③ 학사편입학 []	편입학 후 ()학점 ()점				
		④ 기타	[] 표시				
입학생 쿼터 지원 구분	비법학사 쿼터		법학사 []		비법학사 []		
	타교출신 쿼터		부산대학교 출신 []		타교 출신 []		
	지역균형인재 쿼터		부산·울산·경남권 대학 출신 []				
본인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접수확인	
부 산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입학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모집요강>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재하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2. 「학력」 기재요령

-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개까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1개의 학위와 관련된 학력만 기재합니다.
- '본인지정학위'는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입학생 쿼터 및 그 밖의 평가대상을 고려하여 본인이 지정하는 학위를 말합니다.

3. 「학부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 기재요령

- <모집요강>의 학부성적 평가방법 및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기재하기 바랍니다.
- ①란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고 <모집요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1개의 백분위점수를 기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점수를 기재합니다. 복수의 학위 취득자는 「학력」란에 '본인지정학위'로 표시된 학부 성적을 기재합니다(학사편입자는 아래의 ③ 참조).
- ②일반편입학한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를 하고, 편입학 전의 대학(교) 및 편입학한 대학(교)에서 각각 이수한 학점 수 및 평균평점 백분위 점수를 모두 기재합니다.
- ③학사편입한 사람으로서 쿼터제 적용 등과 관련하여 학사편입학한 대학(교) 또는 학위를 지정한 경우 해당 칸에 '√' 표시를 하고, 편입학 전의 대학(교) 및 편입학한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백분위점수)을 모두 기재합니다(학점 수는 기재하지 않음). 단, 편입학 전의 대학(교) 학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③이 아니라 ①에 해당 학부과정의 성적을 기재합니다.
- ④기타 : 백분위 점수가 없거나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점은행제 또는 독학사 등 편입학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적 대학의 성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의 백분위 성적만을 기재하기 어려운 사람은 "√" 표시만 합니다. 제출된 성적표를 기초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4. 「지원 구분」란에는 '입학생 쿼터제'의 내용을 숙지한 후 본인이 적용을 받으려는 쿼터별 분류 기준에 "√" 표시를 합니다.

수험 표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수험번호		
성명		
전형구분	㉠군 / ㉡군	특별전형/ 일반전형
2026년 월 일		
사 진 (3cm × 4cm) 부 산 대 학 교 총 장		